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2022. 2.



보 건 복 지 부
보 육 정 책 관

목 차

I. 추진경과	1
II. '22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3
1. 추진목표	3
2. 추진과제	3
① 열린어린이집 확대	3
②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4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 시스템화	5
III.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6
1. 선정대상	6
2. 선정기준	6
3. 관리체계	8
4. 선정절차	9
5. 재선정	10
6. 선정취소	11
IV. 행정 조치사항	12

붙임 1.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p.13)

붙임 2. 열린어린이집 선정 간소화 방안(p.22)

붙임 3. 2021년 열린어린이집 유형별, 선정 현황(p.23)

붙임 4. 열린어린이집 선정서(p.24)

붙임 5. 열린어린이집 관련 양식(p.25)

I

추진경과

1 추진배경

- 아동학대 근절대책('15.1월)의 하나로 시설개방·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추진('15년~)

- ① 법률 개정('15.9.19 시행):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권(법 제25조의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비율이 50%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법 제25조)
-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5년), 우수 열린어린이집 선정('15~18년, 매년 100개소)

2 '21년도 추진사항

- ▶ 열린어린이집 확대 목표 초과 달성(9,000→10,022개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통계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활동 인정기준 마련 및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참여 활성화 등 제도 내실화,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및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운영 승계 기준 완화 등 현장 부담 완화

- (사업계획) '21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교육자료 안내(홈페이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2월)

- (선정) 10,022개소 선정(전체 어린이집 33,246개소 대비 30.1%)

* 연도별 선정현황 : ('17) 1,859개소 → ('18) 3,404개소 → ('19) 5,291개소 → ('20) 7,532개소

< 2021년 열린어린이집 현황 >

구분	어린이집 유형								선정 유지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어린이집 (A)	33,246 (100%)	5,437 (16.4%)	1,285 (3.9%)	640 (1.9%)	10,603 (31.9%)	13,891 (41.8%)	142 (0.4%)	1,248 (3.8%)	-
'21 열린 어린이집 (B)	10,022 (100%)	3,455 (34.5%)	181 (1.8%)	113 (1.1%)	2,839 (28.3%)	3,141 (31.3%)	11 (0.1%)	282 (2.8%)	3,295 (32.9%)
B/A(%)	30.1%	63.5%	14.1%	17.7%	26.8%	22.6%	7.7%	22.6%	-

□ (평가반영) 열린어린이집 선정실적에 대해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반영(9월)

평가척도		평정기준(점수)
열린어린이집 실적(A)	부모모니터링 실적(B)	
25% 이상 선정	50% 이상 진행	5점
20% 이상 선정	40% 이상 진행	4점
15% 이상 선정	30% 이상 진행	3점
10% 이상 선정	20% 이상 진행	2점
5% 이상 선정	10% 이상 진행	1점
미충족 (열린어린이집 5% 미만 선정 또는 부모모니터링 10% 미만 진행)		0점

* (A), (B) 모두 충족될 경우 해당 평정기준(점수) 부여

□ (포상) 2021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교육·홍보·컨설팅(육아중) 실적 등을 반영하여 보육서비스 지원 유공자 장관표창 수여('21.10.22.)

□ (주요 추진사항)

○ 열린어린이집 설치 확대

- 시·군·구(229개) 별 관할 어린이집 최소 25% 이상을 지자체장(시·도지사)이 선정하여 목표치의 +111%(10,022개소) 달성

○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시스템(內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선정심사 및 점검, 현황 관리 등 시스템 지원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 열린어린이집 선정 인센티브 확대 및 운영 기준 완화

-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제한 사항 개선완료
시 지원
- 대표자·소재지 변경, 국·공립 전환 시, 열린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유지 가능

○ 비대면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기준 마련

- 서면, 온라인, 전화상담, zoom 등 영상을 통한 다양한 운영형태 인정

Ⅱ

'22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비전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22년 목표	열린어린이집 지속적 확대로 전체 어린이집의 35% 선정 * 10,022→ 11,000개소 (시군구별 어린이집 최소 25% 이상)	
	과제	세부 과제
추진 과제	1.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내실화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활동 활성화 ②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참여 활성화
	2. 열린어린이집 시스템 활용 제고	① 시스템 내 열린어린이집 현행화 ② 시스템으로 현황 적극 관리
	3. 선정 필수제출 서류 간소화	① 서류확인 방식→면담(현장 확인) ② 서류 중복확인 항목 제거

1 추진목표

< 열린어린이집 지속적 확대 >

- ☐ 열린어린이집 지속적 확대로 전체 어린이집의 35% 선정
- 시군구(229개)별 관할 어린이집 최소 25% 이상을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선정
 - * 시군구별 25%는 최소 기준으로, 선정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한 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원칙
- ⇒ 신규 및 재선정으로 '22년까지 11,000개소 이상 확대
 - * '17년 1,859개소 → '18년 3,404개소 → '19년 5,291개소 → '20년 7,532개소 → '21년 10,022개소 → '22년 11,000개소(전체의 35% 이상)

② 추진과제

< ①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내실화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활동 활성화

- (대상)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부모교육, 부모 참여프로그램
- (평가기준) 서면, 온라인, 전화상담, 어린이집의 zoom 등 영상을 통한 부모참여프로그램 다양한 운영형태 인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참여 활성화

- 보육교직원 및 부모 외에 지역사회 인사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의무가 없는 20인 이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 시 가점 부여

< ② 열린어린이집 시스템 활용 제고 >

☐ 시스템 내 열린어린이집 현행화 조치 필요

- 시스템으로 열린어린이집 현황 적극 관리
 - 열린어린이집 관련 통계를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활용하는 바, 각 지자체에서는 선정, 대기, 종료 등 시스템 현행화 조치 필요
- *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시 시스템상 열린어린이집 선정실적 반영(원칙)

< ③ 선정 필수제출 서류 간소화 >

☐ (서류 간소화) 서류 확인 항목 → 면담(현장확인)으로 확인 방식 변경*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 * (기존) 실시기록 서류 확인 → (개정) 실시여부 면담(현장확인)

☐ (중복 확인 제거) 부모 관련 항목의 연간운영계획 중복 확인

- 부모만족도 조사, 부모참여활동안내 및 결과공지
- * (기존) 연간운영계획, 기록 또는 안내문 → (개정) 기록 또는 안내문

Ⅲ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세부사항

1 선정대상

- ☐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참여·선정 가능

2 선정기준

구분	내용
선정 요건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이상)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⑤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 (세부 선정기준) 어린이집의 구조·운영(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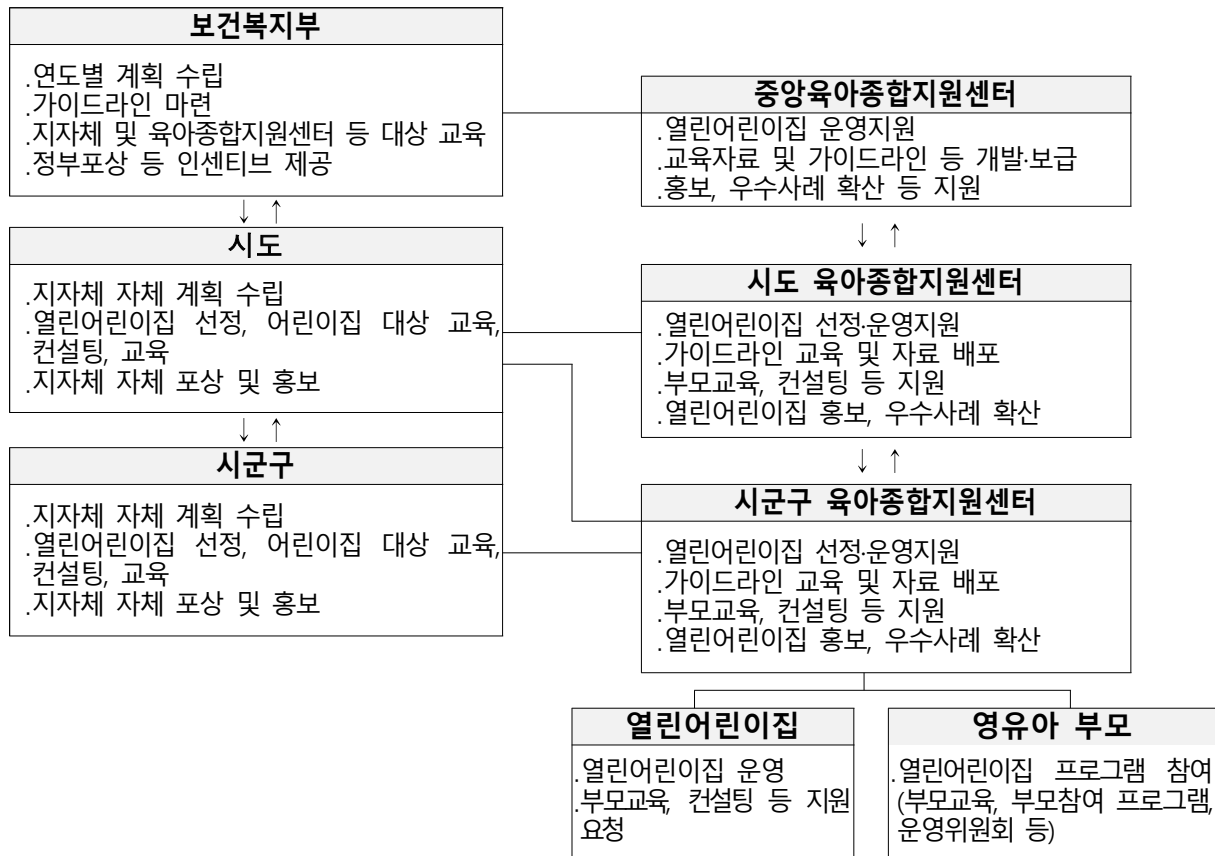
- 신규(재)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선정 항목	배점	비고
1. 개방성	30	
○ 공간 개방성	15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은 보육실 문의 약 30% 이상으로 설치하여 상시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15	
-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13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10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10	
- 보육실 문에 투명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12)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13)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3점 배점	10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11)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12)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 정보 공개	5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5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 온라인 소통 창구	5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운영		
2. 참여성	40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4	
- 연 1회 이상 실시여부 면담(현장확인*)	4	
* 코로나로 인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이 경우 관련 자료 현장 확인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4	
○ 부모교육	4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연 2회 이상),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	4	
-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연 2회 이상 충족 시	2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10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분기별 1회 이상),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	10	
-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분기별 1회 이상 충족 시	5	
○ 부모만족도 조사	4	
- 연 1회 결과기록 충족	4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6	
○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4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연 2회 이상), ③안내문(실시계획, 결과공지) 모두 충족	4	
3. 지속가능성	10	
○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연 1회	6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결과공지: 분기별 1회 이상	4	
4. 다양성	5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연 2회 이상	2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15	
총 점	100	

③ 관리체계

- (보건복지부)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교육,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열린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등
 - (설명회) 지자체(복지부 주관),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설명회 및 지자체별(지자체,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1회 이상) 개최
 - (컨설팅)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열린 어린이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컨설팅·상담 지원 실시
 - (교육, 홍보)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부모교육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현장 출장 등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여비 등 지급 조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자료 및 가이드라인 개발·제작,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컨설팅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체계 >



4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별 관할 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최소 25% 이상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함

* 열린 어린이집 선정 실적은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 지속 반영

□ (선정공모) 지자체의 장(시·도, 시·군·구청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함

□ (선정심사)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함(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다만, 선정위원회 구성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 외에 외부위원을 50%이상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 확보 조치
- 선정 시 불필요한 서류작성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어린이집 현장 부담 완화 조치>

- ① 평정항목 중 개방성(공간개방성,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참여성(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은 현장확인을 통해 실시하고 서류 및 사진자료 제출 금지
- ② 현장확인 항목 외에 지자체 별도로 정하여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실적 평정기간은 2021.11월 ~ 2022.10월(1년)까지를 기준으로 함
*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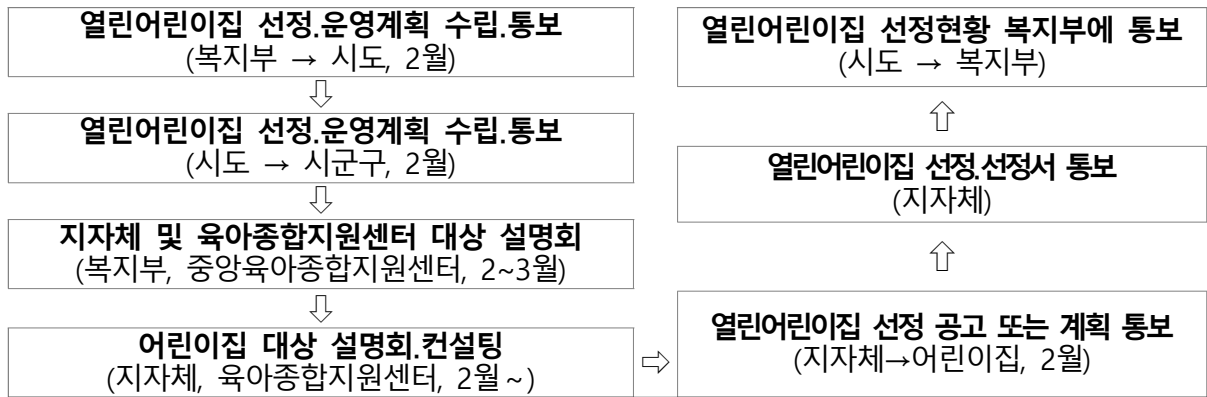
☐ (선정) 열린어린이집 선정주기 표준화 관리

- 매년 지지체장이 신규·재선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선정서 배부, 선정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지지체장은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선정서를 반드시 배부

[5] 재선정

- ☐ 매년 8~10월에 지지체장이 유효기간이 도래한 열린어린이집에서 재선정을 희망 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함(신규 선정기준과 동일)
* 재선정 기간이 8~9월일 경우, 평정기간 1년을 준용하여 평정할 것
- 선정기간은 신규선정 이후 연속하여 재선정 시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이상 연속하여 재선정 시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3년으로 함

<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



6 선정취소

☐ (취소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취소사유)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취소 사유 추가 가능

- 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④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 (취소절차)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 실시

- 시·도지사가 선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하고 시·도지사가 취소절차 진행
- 열린어린이집 운영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의견제출통지 생략 가능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를 회수하여 폐기조치
 - 선정취소일은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IV

행정 조치사항

① '22년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자체)

- 일시·방법 : ~3월 둘째주, 영상자료 업로드(육아종합지원센터업무관리시스템)
- 전달 방법 : 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 시군구) → 열린어린이집 담당공무원(시도, 시군구) 전달
- 주요내용 : '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설명회
 - * 설명회 : 2022년 보육사업지침 교육 등에 포함하여 시행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관리(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자체의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수립·통보(시도→시군구 → 어린이집, 2~3월)
- 지자체 주관(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 개최(3월~)
-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조사 실시(3월~), 희망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상담지원 등(육아종합지원센터)
- 2022년 열린어린이집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제출(시군구→시도→복지부, 2022.4.29.(금)까지)
 - * 지자체별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실시(6~7월)
- 시스템 내 시도별 열린어린이집 현행화 조치
 - * '22년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9월)시 시스템 상 열린어린이집 선정 실적 반영(원칙)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자체, [신규] 10~11월, [재선정] 8~10월)

- 선정기준, 절차를 준수하여 선정 후 선정서 반드시 배부
- 열린어린이집 미선정 시, 해당 지자체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적용되지 않는 바, 반드시 선정을 추진하여 어린이집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바람
 -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국공립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및 배점, 보조교사,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포상 및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반영, 자율운영 보장을 위한 조치(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 등을 제외함

구분	선정기준	비고
1. 개방성	30점	
○ 공간 개방성	-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3점 배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은 보육실 문의 약 30% 이상으로 설치하여 상시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 부모 공용공간	- 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 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부모 공용공간을 1곳 이상 마련되어야 하며 기본설비(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을 현관 등에 설치 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함	5점
○ 정보공개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5점
○ 온라인 소통창구	-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실, SNS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5점
2. 참여성	40점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 면담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여부 확인 * (예시)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은 언제 진행하였나요? * (예시) 신입원아 현원 중 몇 분의 부모가 참석하셨나요? * (예시) 어떤 자료로 진행하였나요? (코로나로 인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이 경우 관련 자료 현장 확인)	4점
○ 부모 개별상담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 영유아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 단,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4점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총회	-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 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회의록, ③회의결과안내공지 모두 충족해야 함	4점

구분	선정기준		비고
	-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실시횟수를 평가(분기별 1회 이상) ① 총회운영 관련 조합 정관, ② 총회 개최 안내 공지, ③ 총회회의록 모두 충족해야 함		참여시 가점 1점
○ 부모교육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연 2회 이상)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 시 4점 부여	4점	
	*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연 2회 이상 충족 시 2점 부여	2점	
○ 부모참여 프로그램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분기별 1회 이상) ③실시기록 모두 충족 시 10점 부여	10점	
	*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분기별 1회 이상 충족 시 5점 부여	5점	
○ 부모 만족도조사	- 연 1회 부모만족도조사 결과기록	4점	
○ 부모 어린이집 참관	- 연중 운영 * ①참관안내문 현장 게시(참관자격, 시기 및 방법 등), ②부모참관 상시운영(현장확인)을 모두 충족해야 함	6점	
○ 자체 부모 모니터링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연 2회 이상) ③안내문(실시 계획, 결과공지) 모두 충족해야 함	4점	
3. 지속가능성		10점	
○ 부모참여 활동 선호 및 참여 의견조사	- 연 1회 ①결과기록 ②수요조사 반영여부 모두 충족해야 함	6점	
○ 부모참여 활동 정기 참여안내 및 결과공지	- 전 부모 대상으로 ①참여안내(미참여 부모의 활동 독려문구 포함), ②결과공지 ③실시횟수(분기별 1회 이상) 모두 충족해야 함	4점	
4. 다양성		5점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균형적 운영 여부 * 부모참여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시기, 대상, 내용, 장소 등)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일회성 행사 지양)	3점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연 2회 이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활동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미인정	2점	
5. 지자체기준		15점	
총점		100점	

* 열린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해 신규선정(재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 (20점) 2. 참여성 (30점) 3. 지속가능성 (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해야 함

* 열린어린이집 모든 항목은 선정하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일관된 부분점수 허용 가능

<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설명 >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 (개요)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방성 증진이 필요하며, 보육시간 중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여부로 판단함
- (평정기준)
 - [15점]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 [13점]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10점] 보육실 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12점
 -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전체 보육실 문에 투명창을 설치한 경우 13점
 - [10점]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12점
 -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11점

※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이 문의 약 30% 이상으로 설치하여 상시 개방되어 보육실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 투명창에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커튼 등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보육실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 (확인방법) 현장확인

○ (배점) 15점

나. 부모 공용 공간

- (개요) 부모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함
- (평정기준)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1곳 이상 마련 여부
 - 부모 공용공간에는 기본설비(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 부모공용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 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함
- (확인방법) 현장확인
- (배점) 5점

다. 정보공개

- (개요)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수시(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월, 수시 공시)로 확인하고 수정하여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게 함
- (평정기준) 어린이집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하는지 여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공시범위 및 횟수, **내용의 적정성**(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정보공시 참고)에 맞게 정보공개
- (확인방법) 공시항목에 대한 현장확인
- (배점) 5점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개요) 어린이집과 부모,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
- (평정기준)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코너,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스마트 알림장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 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 (확인방법) 온라인 소통자료 **현장확인**
- (배점) 5점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 (개요) 신입 원아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철학,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지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
- (평정기준) 연 1회 이상 **실시 여부**
- (확인방법) 면담
 - * (예시)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은 언제 진행하였나요?
 - * (예시) 신입원아 현원 중 몇 분의 부모가 참석하셨나요?
 - * (예시) 어떤 자료로 진행하였나요?(코로나로 인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이 경우 관련 자료 **현장 확인**)
- (배점) 4점

나. 부모 개별 상담

- (개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전반에 대해 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 교환 등 개별 상담 실시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영유아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 상담 실시 여부
 - * 단,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운영일지 또는 상담기록 등)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적 **현장확인**
- (배점) 4점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협동어린이집의 경우는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 (개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함
-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 a.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회의록, ③회의결과 안내 공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법적(영유아보육법 제25조) 준수사항이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등 기본내용을 준수해야 인정
 - b. 협동어린이집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 총회 또는 이사회 ①운영규정(정관 등), ②회의개최 안내 공지, ③회의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방법)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총회 또는 이사회) 조합 정관, 회의 개최 안내 공지자료, 회의록 등 증빙자료
영상회의(zoom 등) 가능 ★ 4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 어린이집 관계자, 부모 외 지역사회 인사가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점 가점 부여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함, 그 외는 지역인사 필수)

라. 부모교육

- (개요)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연 2회 이상), ③실시기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단,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연 2회 이상 충족 시 2점 부여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등을 이수하고 실시기록(참여 부모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인정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 (개요)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선정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예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부모참여수업 등)
-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분기별 1회 이상), ③ 실시기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단,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분기별 1회 이상 충족 시 5점 부여
 - 코로나로 인해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연기하고 관련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하거나, 실시간 화상을 통한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 인정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운영일지 등) 등 증빙자료 ★ **4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10점**

바. 부모만족도 조사

- (개요)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평정기준) 연 1회
- (확인방법) 결과기록 관련 증빙자료
- (배점) **4점**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 (개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참관하는 것
- (평정기준) 상시 연중 운영
 - ① 참관안내문 현장 게시(참관자격, 시기 및 방법 등) ②부모참관 상시운영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방법) **현장확인**(상시운영 여부 면담확인, 참관안내문 현장 게시)
- (배점) **6점**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

- (개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안전·급식·위생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전체 학부모에게 계획 및 결과 공지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실시계획, 결과공지 안내문(전 부모 대상)**
 -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연 2회 이상) ③전 부모 대상 안내문(실시계획, 결과공지) 모두 충족해야 함
 - 대면 자체 부모모니터링이 원칙이나, 코로나로 인한 실시간 비대면(ZOOM 등) 자체 부모모니터링 방식도 인정(녹화 영상 미인정)
-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실시계획, 결과공지)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 * 자체모니터링 점검표, 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 어린이집 평가 점검표 등 활용
- (배점) **4점**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 (개요) 부모참여 활동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참여여부 조사는 해당 안됨)
 - * 수요조사는 내용, 대상, 시간, 방법 등 부모참여활동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여야 함 (일부 항목만 조사 가능)
- (평정기준) 연 1회
 - ①결과기록 ②수요조사 반영여부* 모두 충족해야 함
 - * 수요조사 반영여부는 참여성(‘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등)에서 확인(내용, 시간, 대상 등)
 - 반영여부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없이 ‘참여성’에서 제출한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
- (확인방법) 수요조사 결과기록, 수요조사 반영여부 등 증빙자료 ★ 1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6점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결과공지

- (개요)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미참여 부모의 참여 독려를 위한 부모참여활동 결과 등 공유
- (평정기준) 분기별 1회
 - 전 부모 대상으로 ①참여안내(미참여 부모의 활동 독려문구 포함), ②결과공지 ③실시횟수(분기별 1회) 모두 충족해야 함
 - * 코로나로 인해 부모참여활동 계획을 변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 경우 인정
- (확인방법) 참여안내 및 결과공지 안내문 등 증빙자료 ★ 4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4점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개요) 부모참여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일회성 행사 지양)
- (평정기준) 부모참여활동의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 (확인방법) ‘2. 참여성’의 관련 실시기록 등에서 확인
- (배점) 3점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개요) 지역사회의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일반적인 자원(도서관, 초등학교, 우체국, 노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트 등), 지역사회의 특별한 자원(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
-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부모대상 또는 영유아·부모 함께 참여)
 -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
- (확인방법) 안내문,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 (배점) 2점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개요) 지자체가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적용
- (평정기준 및 확인방법) 지자체에서 정하여 적용
- (배점) 15점

< 예시 >

- 부모 자율모임 구성 및 운영	- 인근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열린보육체험단 운영 등

연번	어린이집 서류	선정항목	확인매뉴얼(항목)
0	서류 없음 (현장 확인)	1. 개방성	
		1-가. 공간개방성	• 전체보육실 수 • 참관실 수 • 복도에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보육실 수 • 보육실 문에 투명창(약 30% 이상)이 있는 보육실 수 • 시트지, 커튼 등 참관 방해요소 부착 여부
		1-나. 부모 공용공간	• 부모대기실 또는 상담실 설치 여부 (기본설비(게시판, 건의함, 육아관련 책자 등)) * 별도공간이 없어도 기본설비를 갖추었으면 가능
		1-다. 정보공개	• 공시범위 및 횟수에 따른 공시여부
		1-라. 온라인소통창구	• 온라인 양방향 소통기능 확인 •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여부(전체 부모 공개)
		2. 참여성	
1	어린이집 연간운영계획, 운영일지 및 실시(결과) 기록 이외 확인 가능 한 자료	2-사.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 참관안내문 어린이집 게시여부 * 상시운영은 보육교직원 면담 등으로 확인
		2. 참여성	
		2-가.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실시 여부 면담 * 코로나로 인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이 경우 관련 자료 현장 확인
		2-나. 부모 개별상담	연간운영계획, 운영일지(또는 상담기록)에서 부모개별상담 계획 및 실시기록 확인
		2-라. 부모교육	연간운영계획, 운영일지에서 부모교육 계획 및 실시기록(2회 이상) 확인
		2-마. 부모참여프로그램	연간운영계획, 운영일지에서 부모참여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기록(분기별 1회 이상) 확인
		2-바. 부모만족도 조사	부모만족도조사 결과기록 (연 1회) 확인
		2-아. 자체 부모모니터링	연간운영계획, 운영일지에서 자체 부모모니터링 실시계획 및 안내문(실시계획, 결과공지) 확인(전 부모 대상, 2회 이상)
		3. 지속가능성	
		3-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운영일지 중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일부 내용 반영 여부 확인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총회 관련	4. 다양성	
		4-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장소’ 등의 일부라도 다양하게 운영 되었는지 확인
		4-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지역사회와 연계 여부’ 확인
3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결과공지	2. 참여성	
		2-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총회 또는 이사회(협동어린이집)	운영규정 구비 확인 / 조합 운영 관련 정관 확인 / 지역사회 인사 포함여부 확인 회의별 회의록 작성 여부 확인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확인 회의별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확인 /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안내문 확인
		3. 지속가능성	
3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결과공지	3-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참여안내 및 결과공지	분기별 1회 안내문(참여안내, 결과공지) 확인

* 어린이집 특성상 「어린이집 서류(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실시기록 등)」 이외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확인)가능

선정 항목		어린이집 서류	확인매뉴얼(항목)
1. 개방성			
1-가. 공간개방성	서류 없음 (현장 확인)		전체보육실 수 참관실 수 복도에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보육실 수 보육실 문에 투명창(약 30% 이상)이 있는 보육실 수 시트지, 커튼 등 참관 방해요소 부착 여부
1-나. 부모 공용공간	서류 없음 (현장 확인)		부모대기실 또는 상담실 설치 여부 (기본설비(게시판, 건의함, 육아관련 책자 등)) * 별도공간이 없어도 기본설비를 갖추었으면 가능
1-다. 정보공개	서류 없음 (현장 확인)		공시범위 및 횟수에 따른 공시여부
1-라. 온라인소통창구	서류 없음 (현장 확인)		온라인 양방향 소통기능 확인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여부(전체 부모 공개)
2. 참여성			
2-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서류 없음 (면담)		연 1회 이상 실시 여부 * 코로나로 인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이 경우 관련 자료 현장 확인
2-나. 부모 개별상담	연간운영계획 어린이집 운영일지, 기록 등		부모 개별상담 계획 확인 부모 개별상담 실시기록(2회 이상) 확인
2-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총회 또는 이사회(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총회 또는 이사회 관련 서류		운영규정 구비 확인 / 조합 운영 관련 정관 확인 / 지역사회 인사 포함여부 확인 회의별 회의록 작성 여부 확인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확인 회의별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확인 /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안내문 확인
2-라. 부모교육	연간운영계획 어린이집 운영일지, 기록 등		부모교육 계획 확인 부모교육 실시기록(2회 이상) 확인
2-마. 부모참여프로그램	연간운영계획 어린이집 운영일지, 기록 등		부모참여프로그램 계획 확인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기록(분기별 1회 이상) 확인
2-바. 부모만족도 조사	부모만족도 조사 결과기록		부모만족도 조사 결과기록(연 1회) 확인
2-사.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서류 없음 (현장 확인)		참관안내문 어린이집 게시여부 확인 * 상시운영은 보육교직원 면담 등으로 확인
2-아. 자체 부모모니터링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어린이집 연간운영계획, 안내문(실시계획, 결과공지) 2회 이상 확인
3. 지속가능성			
3-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어린이집 운영일지 등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결과기록 확인(참여성에서 확인, 일부도 가능)
3-나.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결과공지	안내문		안내문(참여안내, 결과공지) 확인
4. 다양성			
4-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어린이집 운영일지 등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장소' 등의 일부라도 다양하게 운영되었는지 확인
4-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지역사회와 연계 여부' 확인

* 어린이집 특성상 「어린이집 서류(연간운영계획, 운영일지 등)」 이외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확인)가능

붙임 1-4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항목 및 확인매뉴얼

* 어린이집명 : _____

구분	항목	확인방법		항목 배점	배 점
개방성	◦ 공간개방성	· 어린이집 내 모든 보육실 내부를 보육실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관찰방해요인 확인(시트지, 장식 등)) 환경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참여성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 면담(현장 확인)	연 1회 이상	4	
	◦ 부모 개별상담	· 어린이집 운영일지, 부모 공지 안내문, 기록 등	연 1회 이상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총회 또는 이사회		연 4회 이상(분기 1회)	4	
	◦ 부모교육		연 2회 이상	4	
	◦ 부모참여프로그램		연 4회 이상(분기 1회)	10	
	◦ 부모만족도 조사	· 결과기록	연 1회	4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 참관안내문 어린이집 게시 여부 현장 확인		6	
	◦ 자체 부모모니터링	· 어린이집 연간운영계획, 안내문(실시계획, 결과공지) 등	연 2회 이상	4	
지속가능성	◦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 어린이집 운영일지, 부모 공지 안내문, 기록 등	연 1회 이상	6	
	◦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연 4회 이상(분기 1회)	4	
다양성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어린이집 운영일지, 부모 공지 안내문 등에서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내용 확인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는지 확인	3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지역사회와 연계 여부' 확인	2	
지자체 선정기준		-		-	
총 점				55	

* 부모공지 안내문은 실시일자, 내용 등 객관적으로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온라인 소통 창구(스마트알림장 등)로 확인하며, 온라인 소통이 어려운 환경에는 선정 시 제출(확인) 서류로 현장확인

* 정기점검은 총점 55점 중 40점 이상 미 유지시 유효기간 내 인센티브 제외

구분	선정항목	확인방법		
		개정 전	'21년 개정	'22년 개정
1. 개방성	<준비 사항 없음>	-	-	-
2. 참여성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자료 안내문 신입원아 명단 실시기록(운영일지 등)	실시기록(운영일지 등)	면담(현장확인)
	◦ 부모 개별상담	연간운영계획 안내문(가정통신문 등) 실시기록(운영일지 또는 상담 기록)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운영일지 또는 상담 기록)	현행 유지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협동어린이집)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공지 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안내 자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공지 자료	
	◦ 부모교육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실시기록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	
	◦ 부모참여프로그램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실시기록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	결과기록
	◦ 부모만족도 조사	연간운영계획 만족도조사지(양식) 안내문 결과기록	연간운영계획 결과기록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상시) <현장확인>	상시운영 여부 참관안내문 현장게시 등	상시운영 여부 참관안내문 현장게시 등	
	◦ 자체 부모모니터링	-	자체모니터링 점검표 모니터링 결과 안내기록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3. 지속 가능성	◦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 의견조사	수요조사 설문지(양식) 실시기록 수요조사 반영여부	실시기록 수요조사 반영여부 (2. 참여성 자료에서 확인)	현행 유지
	◦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결과공지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안내문
4. 다양성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2. 참여성의 '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확인	2. 참여성의 '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확인	현행 유지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2. 참여성의 '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확인	2. 참여성의 '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기록에서 확인	
5.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별 상이	-	-	-

(‘21.12.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개소수(A)	선정 개소수(B) (B/A)	어린이집 유형							선정유지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개소수	비율
계	33,246 (100%)	10,022 (30.1%)	3,455 (34.5%)	181 (1.8%)	113 (1.1%)	2,839 (28.3%)	3,141 (31.3%)	11 (0.1%)	282 (2.8%)	3,295	32.9
서울	5,049	1,501 (29.7%)	1,077	4	10	157	215	2	36	431	28.7
부산	1,668	679 (40.7%)	203	15	12	212	223	0	14	223	32.8
대구	1,187	449 (37.8%)	124	6	2	215	89	0	13	123	27.4
인천	1,803	754 (41.8%)	211	3	8	197	308	1	26	218	28.9
광주	1,002	267 (26.6%)	54	6	1	80	120	0	6	102	38.2
대전	1,101	324 (29.4%)	54	4	3	85	172	0	6	117	36.1
울산	720	302 (41.9%)	83	7	2	119	76	3	12	101	33.4
세종	343	111 (32.4%)	64	0	0	29	10	0	8	20	18.0
경기	10,136	2,593 (25.6%)	843	12	21	588	1,064	2	63	955	36.8
강원	954	294 (30.8%)	83	14	5	102	79	0	11	107	36.4
충북	1,042	342 (32.8%)	92	19	5	128	85	0	13	136	39.8
충남	1,625	319 (19.6%)	88	13	8	87	110	1	12	124	38.9
전북	1,115	414 (37.1%)	87	15	13	169	120	0	10	115	27.8
전남	1,051	429 (40.8%)	130	30	9	129	111	1	19	125	29.1
경북	1,617	530 (32.8%)	93	18	6	254	144	0	15	180	34.0
경남	2,357	587 (24.9%)	144	12	8	222	186	1	14	171	29.1
제주	476	127 (26.7%)	25	3	0	66	29	0	4	47	37.0

* 선정유지 : '20년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기관 중 '21년도 선정심사 없이 유지되는 열린어린이집

제 2022-0000호

열린어린이집 선정서

어린이집명 :
대표자 :
원장 :
주소 :
선정유효기간 :

위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합니다.

2022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제1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심사서

연번	어린이집명 (유형)	현 원/ 정원	현장평가 심사점수						담당자 의견	심사 결과
			개방성	참여성	지속 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기준	득점계		
1			/30	/40	/10	/5	/15	/100		
	< 어린이집 현장 사진 >									
2	어린이집명 (유형)	현 원/ 정원	현장평가 심사점수						담당자 의견	심사 결과
			개방성	참여성	지속 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기준	득점계		
			/30	/40	/10	/5	/15	/100		
	< 어린이집 현장 사진 >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2022. 0. 0.

수 신 : ○○○어린이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2. 당사자	대 표 자	○○○	어린이집 명	○○○ 어린이집	
	성 명				
	주 소	○○시 ○○구 ○○○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발생 - 선정취소 사유 :				
4.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전화) (☎)			
		전자우편			
	fax				
	제출기한	2022년 월 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2. 당사자	대표자성명		어린이집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통지서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 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어린이집고유번호 :
- 대표자 성명 :

2. 처분 내용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귀 원에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소'를 통지합니다.

- 처분제목 :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 처분사유 :

2022.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운영 포기원						
어린이집명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 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원장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선정취하 사유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원을 제출하오니,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